# 식품유형 분류 원칙

2017. 12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

## 목 차

1. 식품유형의 정의	1
2. 식품유형 분류 기본원칙 2	2
3. 식품유형 분류시 고려되는 요건 스	4
4. 식품유형 분류 순서 5	5
5. 식품유형 분류 세부 방법 8	3

## 01

### 식품유형의 정의

제품의 원료, 용도, 섭취형태, 성상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공통 사항을 정하고,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사한 특성의 식품끼리 묶은 것



### 식품유형 분류 기본원칙

- 《 식품유형은 가공식품에 대하여 적용하며,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의 구분은 '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메뉴얼'에 따른다.
  - \* 다만,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연산물에도 유형을 부여하고 기준·규격을 설정하여 관리 (예) '벌꿀류', '천일염', '기타식육', '기타알'
- 🎇 식품의 분류는 '식품군-식품종-식품유형'의 3단계 체계를 원칙으로 한다.
  - \*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을 두지 않을 수 있으며, 식품유형이 없는 경우 식품종을 식품유형으로 본다
  - 식품군(대분류): 원재료 및 산업적 분류를 고려한 가장 큰 분류
  - 식품종(중분류): 제조방법 및 소비용도를 고려한 분류로서 식품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 \* "품목 간 대체성이 있는 상품"들을 중심으로 분류 형성
  - 식품유형(소분류) : 시장의 상황과 소비자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구분한 분류
- 《 식품유형은 가능한 유사한 특성의 식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며, 세부 품목까지 고려하여 구분하지 않는다.
  - (예) 액상커피, 분말커피, 볶은커피, 조제커피, 인스턴트커피 → 커피
- 《예 소비자용 식빵과 샌드위치 제조 원료용 식빵의 유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
- ☼ 자연산물, 타 법령에 의한 유형 및 특수용도식품에 해당하는 유형은 타 유형보다 먼저 분류한다.
- ※ 용도별로 구분하는 경우, 단일성분 여부, 특정성분 함유여부, 특정원료 사용 여부, 특정 제조방법 사용여부를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식품 유형을 정한다. (☞ 식품유형부류 흐름도)
- ※ 두 가지 유형의 특성이 공존하는 경우(두 개 이상의 유형에 모두 적합한 경우) '식품유형 분류 흐름도'에서 유형분류 순서가 앞선 것을 적용한다.
  - (예) 배추김치는 김치류, 절임류, 과채가공품의 정의에 모두 적합할 수 있지만 분류순서(김치류 > 절임류 > 과채가공품)에 따라 김치류로 분류
  - (예) 두유에 탄산을 주입한 경우는 '탄산음료>두유'에 따라 탄산음료로 분류

- ▒ 동일한 제품이라도 사용목적(또는 섭취형태)을 고려하여 식품유형을 달리 할 수 있다.
  - (예) 홍초의 초산함량이 4% 이상인 경우, 희석하여 음용이 목적이면 '음료류'群에서, 식품조리시 풍미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면 '조미용식품'群에서 유형 적용
- 개별 포장된 여러 가지 유형의 식품이 하나의 용기에 합포장된 경우는 각각의 식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식품유형을 적용한다.
  - \* 개별 포장된 국수와 스프가 함께 포장된 제품 : 건면(국수), 복합조미식품(스프)
-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, 제품의 고유 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는 식품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원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유형을 정할 수 있다.



### 식품유형 분류시 고려되는 요건

▒ 식품의 유형을 판단할 때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내 용	
섭취대상	특정섭취대상(연령, 신체·건강상태)을 목적으로 제조 (예) 영·유아용식품, 환자용식품, 임산수유부용식품 등	
사용원료	가공식품을 특징짓게 하는 원료 또는 성분 (예) 식육, 어육, 코코아분말, 커피, 인삼, 카레, 콩 등	
제조방법	식품을 가공하는 데 사용되어 물리·화학적 변화를 유발하는 가공방법 (예) 유탕, 추출, 착즙, 건조, 절임, 발효 등	
함 량	가공식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배합비율	
제품의 용도	제품을 사용하는 목적 (예) 간편식, 간식, 풍미부여, 조리원료 등	
제품형태	가공식품의 성상 (예) 액체, 고체, 페이스트, 시럽, 분말 등	
섭취방법	가공식품을 섭취하는 방법 (예) 조미목적, 바로 음용, 용출하여 음용 등	



### 식품유형 분류 순서

▒ 식품유형 분류 순서는 다음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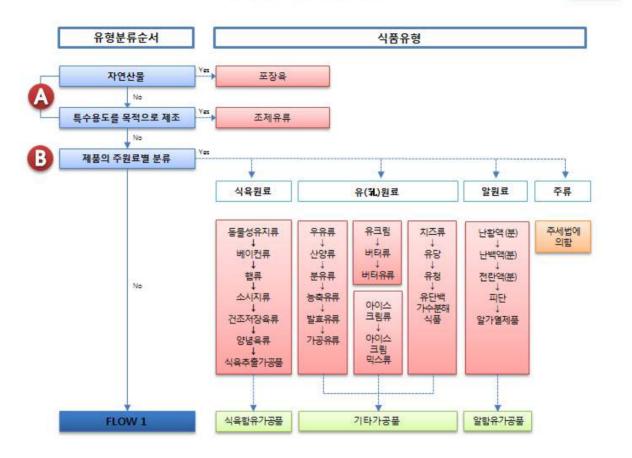
구분	분류기준	대상식품
우선분류 유형	① 가공식품이 아닌 것	자연산물(벌꿀, 천일염 등)
	② 타 법령에서 별도 규정하는 식품	축산물가공품, 주류
	③ 특정 섭취대상을 위해 제조한 식품	특수용도식품
일반유형	④ 단순 가공제품 중 자연산물의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서 별도의 유형이 있는 것	고추가루, 찐쌀 등
	⑤ 단일 원료로부터 채취한 성분을 식용에 적합하게 처리한 것이거나 이로부터 특정 성분을 분리 정제한 것으로, 식품제조의 기본 원료가 되는 제품	식용유지류, 전분류, 당류 등
	⑥ 제품의 원료, 제조방법, 제품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형을 분류 (두 가지 이상 유형의 특성이 공존하는 경우 유형적용 순서가 앞선 것을 적용)	대부분의 식품유형
기타유형	⑦ 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식품 중 특정 원료를 사용 하여 제조한 것	곤충가공식품, 자라가공식품 등
	⑧ 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식품 중 특정 제조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	추출가공식품, 발효식품 등
	⑨ 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식품을 사용된 원료의 구분에 따라 분류*	과채가공품, 곡류가공품, 두류가공품 등
	⑩ ①~⑨에도 불구하고 유형분류가 되지 않은 것	기타가공품

<sup>\*</sup> 원료에 따라 유형을 판단하는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된 원료를 기준으로 판단 (다만, 정제수 제외)

#### 유형 분류 흐름도 Flow1 식품유형 유형분류순서 Yas 별꿀류, 천일염,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자연산물 → No 식육, 유, 알을 주원료로 가공 Yes -Flow 2 또는 주류에 해당 ↓ No 특수용도를 목적으로 제조 특수용도식품 → No Vos \_\_\_\_ 찐쌀, 고춧가루, 실고추, 밀가루, 얼음류, 로얄젤리, 천연향신료, 가공화분, 한천 특정 단일 자연산물 처리 식품 No Yes 기본 원료성 식품 당류 식용유지류 어육가공품 전분류 6 제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 간편식류 간식류 음료류 조미용식품 반찬류 코코아 시리얼 커피 식염 젓갈류 가공품류 면류 인홍삼음료 식초 두부류/목류 빙과 1 No 만두류 다류 김치류 카레 초콜릿류 생식류 탄산음료류 향신료조제품 조미김 과자류 숙석섭취 편의식품류 두유류 장류 건포류 초콜릿기공품 과채음료류 잼류 기타코코아 가공품 발효음료류 소스류 기타음료류 특정 원료 사용 여부 땅콩/견과류 동물성원료 豆모 벌꿀/화분 No 곤충가공식품 로얄젤리제품 효모식품 땅콩또는 견과류가공품 자라가공식품 화분함유제품 a 특정 제조공정 사용 여부 추출 발효 절임 조림 No 추출가공식품 효소식품 당절임 조림류 절임식품 Yes 당류가공품, 기타식용유자가공품, 과채가공품, 곡류가공품, 두류가공품, 서류가공품, 사용 주원료별 분류 기타농산가공품, 기타수산물가공품, 기타동물성가공식품 No. 10 기타가공품

### 유형 분류 흐름도

Flow2





#### 식품유형 분류 세부 방법

식품유형 분류시 아래의 분류순서(1→10)에 따라 판단한다. 적용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면서 적절한 유형이 도래하는 경우 해당 유형으로 분류한다.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의 정의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앞선 순위의 유형을 적용한다.

#### 1 / 가공식품이 아닌 것 (자연산물)

- 🗱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식품 중 자연산물을 가장 우선적으로 분류
  - ▶ 해당 유형 : 벌꿀류, 천일염,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

#### **2** 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식품

- ☼ 축산물(73개유형)은 축산물위생관리법, 주류(12개유형)는 주세법에서 별도로 유형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식품은 일반가공식품의 유형보다 우선 적용
- ▶ 해당 식품 : 식육가공품, 유가공품, 알가공품, 조제유류, 동물성유지류, 아이스크림류, 아이스 크림믹스류, 주류
- \* 유형 분류 순서는 Flow2에 따르되 유형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되는 경우에만 해당 유형으로 분류하고, 그 외의 경우 일반가공식품으로 분류

#### 2-A 자연산물 및 특수용도식품

- 축산물 유래 원료를 사용한 제품 중 식육을 단순 절단하여 포장한 것(자연산물)과 영유아용 분유제품을 우선 분류
  - ▶ 해당유형 : 조제유류, 포장육

#### 2-B-1 식육가공품

-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식품 중 식육 함량이 50%(배합률기준) 이상인 제품은 식육 가공품의 유형을 먼저 적용한다. 다만, 식품유형의 정의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'식육 함유 가공품'으로 분류한다.
- '식육'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의된 가축\*의 식용부위만을 말하며 가축이 아닌 동물의 식용부위는 '기타식육'으로, 이를 가공한 것은 '기타동물성가공식품'(가공식품)으로 분류한다.
  - \* 소, 말 양(염소, 산양 포함), 돼지, 닭, 오리, 사슴, 토끼, 칠면조, 거위, 메추리, 꿩, 당나귀
  - ▶ 동물성유지류(기타동물성유지 제외) ▶ 베이컨 → 햄류 → 소시지류
  - ▶ 건조저장육류
    ▶ 양념육류(분쇄가공육제품 → 갈비가공품 → 천연케이싱 → 양념육)
  - ▶ 식육추출가공품 ( → 식육함유가공품)

#### 2-B-2 유가공품

- 유(乳)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식품 중 최종제품의 유(무지유고형분, 유고형분 또는 유지방) 함량이 각 식품유형의 기준 및 규격을 만족하는 식품은 유가공품의 유형을 먼저 적용한다. 다만, 식품유형의 정의에 정확히 일치하는 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기타가공품으로 분류
  - ▶ 우유류 → 산양유 → 분유류 → 농축유류 → 발효유류 → 가공유류
  - ▶ 아이스크림류 → 아이스크림믹스류
  - ▶ 유크림 → 버터류 → 버터유류
  - ▶ 치즈류 → 유당 → 유청 → 유단백가수분해식품
  - ( → *기타가공품* )

#### 2-B-3 알가공품

- 알(卵)의 내용물을 채취하여 살균, 건조 등의 방법으로 가공처리한 것이거나 알을 주원료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조리·가공한 것
  - ▶ 난황액(난황분) → 난백액(난백분) → 전란액(전란분)
  - **▶ 피단 → 알가열제품** ( → *알함유가공품* )

#### 2-B-4 주류

○ 곡류, 서류, 과일류 및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발효, 증류 등으로 제조가공 한 것으로 주세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

#### ▶ 주세법에 따름

#### 3 특정 섭취대상을 위해 제조한 식품

- ※ 영·유아, 미숙아, 임산부, 수유부 등 영양 관리가 필요한 특정대상을 위하여 제조된 식품으로 일반식품과 구분되는 것
  - ▶ 특수의료용도식품 :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→ 유단백 알레르기 영·유아용 조제식품 → 영·유아용 특수조제식품 → 환자용식품
  - ▶ 영·유아식 : 영아용조제식, 성장기용조제식 → 영·유아용 곡류조제식 → 기타 영·유아식
  - ▶ 그 외 : 임산·수유부용 식품, 체중조절용 조제식품

#### 단일 자연산물을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을 정도로 가공 처리한 것

- ※ 단일 종류의 자연산물을 단순 가공하거나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최소한으로 첨가하여 제조한 식품 중, 통상적으로 식품의 개념이 명확히 성립되어 있고 별도의 식품유형으로 관리 되는 것
  - ▶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, 천연향신료, 밀가루, 찐쌀, 얼음류, 로얄젤리, 가공화분, 한천

#### 식품제조의 기본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(전분·당/식용유지/어육)

 ※ 단일 동・식물성 원료에서 착즙, 추출, 채육 등 물리・화학적 공정을 통해 채취한 성분을 식용에 적합하게 처리한 것이거나, 이를 원료로 추가적인 발효・분해 등의 방법으로 가 공하여 특정성분으로 전환 후 분리 정제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식품산업에서 식품제조 의 기본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과 이를 주원료로 가공한 것 ※ 식품유형은 각각의 분류에 대해 특수성분 → 단일성분 → 단일원료성제품 → 혼합제품→ 가공제품 순으로 분류함

\* 특수성분 : 올리고당

\* 단일성분 : 설탕, 포도당, 과당 등

\* 단일 원료성제품 : 콩기름, 올리브유, 참기름 등

#### 5-A 전분, 당류 및 그 가공품

○ 전분질함유 원료 또는 전분을 이용하여 제조된 당액이나 당질함유 원료로부터 당 성분을 순수 하게 분리정제 하여 규정된 함량 이상으로 제조하여 정제한 것과 이를 주원료 하여 가공한 제품

▶ 전분류  $\rightarrow$  올리고당류  $\rightarrow$  설탕류, 포도당, 과당류  $\rightarrow$  영류  $\rightarrow$  당시럽류 (  $\rightarrow$  당류가공품)

#### 5-B 유지류 및 그 가공품

- 유지를 함유한 식물 또는 동물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게 처리한 것과 이를 주 원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
  - \* '유지'(Edible oils and fats)란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결합한 트리글리세라이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, 식물추출물인 '정유'(Essential oil)와는 구분된다.

▶ 개별유지 : 식물성유지류 → 기타동물성유지

▶ 혼합유지 : 혼합식용유 → 향미유

▶ 유지가공품 : 쇼트닝 → 마가린, 모조치즈, 식물성크림 → 가공유지

( → *기타식용유지가공품* )

#### 5-C 이육 및 그 가공품

○ 어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식품 제조의 원료나 조리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것과 이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

▶ 어육가공품류 : 어육살 → 연육 → 어육반제품 → 어묵 → 어육소시지 → 기타어육가공품

#### **6** / 제품의 원료, 제조방법, 용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

- ☼ 제품의 주원료, 제조방법, 제품형태, 사용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식품을 분류하며, 제품의 섭취형태에 따라 5개의 대분류를 구성하고, 분류별로 성분, 성상, 함량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
- 해당식품의 전형적인 특성에 부합하게 제조된 것이라면 유형적용 순서에 상관없이 해당식품의 유형을 적용하되, 두 가지 유형의 특성이 공존하는 경우(서로 다른 유형의 정의에 모두 적합한 경우) 유형 분류 순서에 따라 분류
- ☼ 단일성분 여부, 특정성분 함유 여부, 특정원료 사용 여부, 제품의 성상 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유형을 정하고, 적절한 유형이 없는 경우 가공방법이나 섭취방법을 고려하여 유형 분류

#### 6-A 간편식류(시리얼, 면류, 즉석식품류)

- 소비자가 한끼의 식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완전가공(조리) 또는 반가공(조리)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가정에서(또는 가정 외에서도) 바로 또는 간단히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는 식품
  - ▶ 시리얼 → 면류 → 만두류 → 생식류 → 즉석섭취·편의식품류

#### 6-B 간식류(과자류, 빵류, 빙과류, 코코아가공품류, 초콜릿류)

- 소비자가 때를 가리지 않고 맛이나, 재미, 심심풀이, 기호를 목적으로 섭취하는 간식이나 주전 부리 식품으로,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추가적인 조리 등의 행위 없이 바로 섭취할 수 있는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
  - ▶ 코코아가공품류(기타코코아가공품 제외) → 빙과 → 초콜릿류 → 과자류(떡 → 빵 → 과자, 캔디, 껌) → 기타코코아가공품
  - · 빵류는 서양에서는 주식으로 섭취되지만 우리나라는 식문화가 달라 빵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가 드물고 간식으로 섭취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과자와 같은 분류에서 유형을 구분하되, 과자보다는 우선적으로 분류
  - ㆍ제품의 특성상 떡이 독특한 특징이 있으므로 빵류보다는 떡류 유형을 우선 분류

#### 6-C 음료류

6-E

- 직접 음용하거나, 희석, 용출 등의 과정을 거쳐 음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식품
  - ▶ 커피 → 인삼·홍삼음료 → 다류 → 탄산음료류 → 두유류 → 과일·채소류음료 → 발효음료 → 기타음료
  - · 다류는 과일/채소 등의 식물성 원료에 물/에탄올의 용매를 넣고 가열 또는 그대로 가용성 성분을 우려내어(추출) 제조된 여액을 음용하는 제품을 말하며. 과·채음료류는 물리적 힘을 가하여 과일·채소로부터 짜낸 착즙액(압착)을 음용하는 제품을 말함
  - · 과일을 설탕에 재운 제품의 경우 당절임에 해당하며, 이 중 여액을 분리한 경우 분리액은 액상차, 당에 절여진 과일은 당절임에 해당.

#### 6-D 풍미제공용 조미식품(조미식품류, 장류)

- 식품의 가공 또는 조리시, 제품에 소량 사용되어 간을 맞추거나 풍미를 증진시키거나 제품의 맛의 특징을 결정짓는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
  - ▶ 식초 → 식염 → 카레 → 향신료조제품 → 장류(메주 → 간장 → 된장, 고추장, 청국장, 춘장 → 혼합장 → 기타장류) → 잼류 → 소스류(마요네즈, 토마토케첩 → 복합조미식품 → 소스)
  - · 정제수에 식육추출농축액 또는 식육추출분말과 조미식품 등을 혼합하여 제조된 육수 제품 (예, 냉면육수)은 소스로 분류
  - · 소스는 풍미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 중 타 유형을 적용받기 어려운 식품에 대해 모두 적용할 수 있어 가장 후순위로 적용

#### 반찬류(수산물가공품, 두부류 또는 묵류, 절임류 또는 조림류, 농산가공식품류, 수산가공식품류)

- 농산물, 임산물, 수산물 또는 축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된 식품으로서, 통상적으로 그 자체가 반찬 등으로 사용되거나 반찬 또는 요리의 재료로 사용되는 식품
  - ▶ 젓갈류 → 두부류 또는 묵류 → 김치류 → 조미김 → 건포류

- · 김치의 종류가 다양하고 사용하는 재료도 다양하며, 김치도 절임류의 한 종류이므로 김치류와 절임류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. 따라서, 김치류는 '김치류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'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의 37개 김치<sup>\*</sup>를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절임류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\* 배추김치(포기김치, 막김치, 보쌈김치, 백김치, 묵은지, 겉절이), 무김치(총각김치, 열무김치, 깍두기, 동치미, 나박김치, 순무김치, 섞박지), 갓김치, 고들빼기김치, 파김치, 깻잎김치, 고구마김치, 부추김치, 오이김치, 양파김치, 민들레김치, 더덕김치, 마늘김치, 달래김치, 두릎김치, 인삼김치, 죽순김치, 호박김치, 미나리김치, 냉이김치, 시금치김치, 콩나물김치, 쑥갓김치, 가지김치, 도라지김치, 고수김치
- · 식육추출가공품은 섭취형태에 따라 즉석조리식품의 유형정의에도 적합할 수 있으나 식육가공품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식육추출가공품으로 분류
- · 수산물을 이용하여 가공한 제품 중 완전조리 또는 반조리되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된 제품은 즉석조리식품으로 분류

#### 7 / 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식품 중 특정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

- 1~6단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중 땅콩 등 견과류, 동물성원료, 로얄젤리, 화분, 효모를 사용하여 제조한 가공식품
  - ▶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: 땅콩버터 →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
  - ▶ 동물성가공식품류 : 곤충가공식품 → 자라가공식품
  - ▶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: 로얄젤리제품, 화분함유제품
  - ▶ 기타 특정원료 : 효모식품

#### 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식품 중 특정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

- ※ 1~7단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중 추출, 절임, 조림 또는 발효공정을 이용하여 제조한 식품
  - ▶ 해당유형 : 추출가공식품, 효소식품, 절임류(당절임 → 절임식품), 조림류

#### 9 / 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식품을 사용된 원료의 구분에 따라 분류

▒ 1~8단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을 유래 원료에 따라 분류

식육함유가공품, 알함유가공품, 당류가공품류, 과채가공품, 곡류가공품, 두류가공품, 기타식용유지 가공품, 서류가공품, 기타농산가공품, 기타수산물가공품, 기타동물성가공식품

#### 10 / 1~9에도 불구하고 유형분류가 되지 않은 것

▒ 어느 유형으로도 분류되지 않은 가공식품